

# 韓·美企業間의 商事紛爭의 實際 및 事例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Case Studies and The Practice of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Enterprises

-Emphasizing Reasonable Solution Methods-

Frank T. Zotto\*

Introduction

Background

American/Korean Agreement

Impartialty

Recent Cas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arties

Settled Cases

Awarded Cases

---

\* 미국 중재협회부회장

## **Case studies and the practice of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enterprises — Emphasizing reasonable solution methods —**

### **Introduction**

In addition to discussing some specific arbitration cases involving Korean and American businesses, this paper will focus on what the AAA considers to be reasonabl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resolving international business disagreements in a speedy and economical way.

### **Background**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is a public-service, not-for-profit, membership organization, founded in 1926 to encourag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voluntary dispute resolving techniques. The AAA is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and has regional offices in all of the major cit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 Association is the largest provider of administrative services, educational and training seminars in the world. It is also active in research on all forms of out-of-court peaceful dispute settlement systems.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widely used and has been growing ever since the passage of the United States Arbitration Act (also known as the Federal Arbitration Act) in 1925. In 1955,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dopted the Uniform Arbitration Act. Modern arbitration laws, strongly supported by American busi-

nesses, are now in effect in almost every state in America.

Domestically, arbitration, which provides an alternative system of resolving commercial conflicts, is incorporated in millions of contracts, insurance policies, leases, franchise and employment agreements, construction contracts, and many other business and personal arrangement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es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avoid the foreign courts. Arbitration and Mediation make it possible to creat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ere disputes can be decided or aided by impartial experts acting under time tested rules and procedures, such as those developed by the AAA. American and foreign entities prefer submitting disputes to arbitration because they can avoid the formalities, complexities, and most of all the uncertainties of foreign court proceedings.

### American / Korean Agreement

Toda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support the use of arbitration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AAA has cooperative inter-association agreements with arbitral institutions in 50 countries. We have had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Board since 1974.

As with all of these agreements, the AAA joi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arbitral organizations in favoring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useful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 to resolve disputes quickly, economically and in a way that allows parties to continue their business relationships and endeavors.

The AAA/KCAB agreement provides a mechanism to resolve locale

disputes which may arise from time to time in disput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arties. The provision, in the arbitration clause which is recommended by both institutions,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two joint arbitration committees (one seated in New York, and one seated in Seoul) each made up of three members, two appointed by the respective Associations, and the third, to act as Chair, to be chosen by the other two. The third member shall not be a member of either Association.

The AAA, like the KCAB, and many other arbitration entities around the world, strongly believes that the availability and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lends confidence and stability to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from different countries.

### Impartiality

Perhaps the most important and most fundamental aspect of arbitration is the parties confidence in the impartiality of the arbitration process, and, more to the point, the parties confidence in the impartiality of the arbitrator.

One reason many parties choose to have their arbitrations administered by established arbitral organizations like the AAA is the added assurance of impartiality that comes with having an experienced administrator. Ultimately, parties want their dispute resolved in a tribunal which promises an enforceable award. Based on the experience of having administered thousands of arbitrations over the years, the AAA has developed practical, and sensible procedures for achieving the kind of neutral hearing parties rely on.

How specifically does the AAA achieve this high level of impartiality?

From the very beginning, when arbitrators are first invited onto the AAA's Panel of Arbitrators, and then again when they are trained by the AAA, before they are ever assigned to hear an arbitration, they are drilled in the importance of their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Every AAA training session, whether it is basic training or advanced training, includes a component dealing with the important issue of neutrality, both in appearance and in fact.

Next, when the AAA proposes arbitrators, parties are sent extensiv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rbitrators. Parties are encouraged to do their own investigations and research about potential arbitrator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AA provide the names of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who have had cases with the proposed arbitrators in the past, so that a new party's research can include discussions with parties who have put matters before the potential arbitrators.

Once an arbitrator is appointed to a case, either as a result of mutual selection or an administrative appointment, the arbitrator is asked to execute an oath which includes the arbitrator's statement regarding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ith any of the parties or their counsel, witnesses etc.

The arbitrator's oath says,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parties have complete confidence in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Therefore, please disclose any past or present relationship with the parties or their counsel, direct or indirect, whether financial, professional, social or of any other kind. If any relationship arises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tion or if there is any change at any time in the biographical information that you have provided to the AAA, it must also be disclosed. Any doubt should be resolved in favor of disclosure. If

you are award of such a relationship, please describe it below. The AAA will call the facts to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counsel."

As is indicated in the oath, the arbitrator has the on-going responsibility to disclose any circumstances which may arise during the life of the arbitration.

Occasionally, after receipt of such disclosed information, both parties will waive any objection to the arbitrator's continued service. Such is the level of confidence the parties frequently have in the arbitrator.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one party to object to the continued service of an arbitrator who has made a substantial disclosure. It is also the case, every so often, that both parties will join in the request to replace an arbitrator after a disclosure.

Und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en a party objects to an arbitrator, based upon disclosed information, and the other side insists that the objection be overruled, then the administrator must decide.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rules read as follows:

#### "Challenge of Arbitrators

##### Article 7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arbitrators acting under these rules sha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Prior to accepting appointment, a prospective arbitrator shall disclose to the administrator any circumstance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Once appointed, an arbitrator shall disclose any additional such information to the parties and to the administrator. Upon receipt of such infor-

mation from an arbitrator or a party, and administrator shall communicate it to the parties and to the arbitrator.

#### Article 8

1. A party may challenge any arbitrator whenever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 party wishing to challenge an arbitrator shall send notice of the challenge to the administrator within fifteen days after being notified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within fifteen days after the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the challenge became known to that party.

2. The challenge shall state in writing the reasons for the challenge.

3. Upon receipt of such a challenge, the administrator shall notify the other parties of the challenge. When an arbitrator has been challenged by one party, the other parties may agree to the acceptance of the challenge and, if there is agreement, the arbitrator shall withdraw. The challenged arbitrator may also withdraw from office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In neither case does this imply acceptance of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 Article 9

If the other party or parties do not agree to the challenge or the challenged arbitrator does not withdraw, the decision on the challenge shall be made by the administrator in its sole discretion.”

The AAA has developed a careful and thorough review process to deal with such disclosures and challenges.

Clearly, a personal or financ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an arbitra-

tion would prevent service as an arbitrator, except in the unlikely and unusual case in which parties would waive the disqualification in writing, prior to the first hearing. Care is taken by the administrator not to list names of persons with personal or financial interests in the arbitration. Sometimes however, especially in certain industries, it is known that almost everyone may have at one time or another had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one or more participants in the arbitration.

In any event, arbitrators must disclos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a party, a party's representative, or a witness. The AAA's policy is that arbitrators must be impartial, and that the parties have confidence in their impartiality.

In addition to the rules which deal with disclosures, the Code of Ethics for Commercial Arbitrators also has a provision dealing with this subject:

Canon II. AN ARBITRATOR SHOULD DISCLOSE ANY INTEREST OR RELATIONSHIP LIKELY TO AFFECT IMPARTIALITY OR WHICH MIGHT CREATE AN APPEARANCE OF PARTIALITY OR BIAS

#### Introductory Note

This Code reflects the prevailing principle that arbitrators should disclose the existence of any interests or relationships which are likely to affect their impartiality or which might reasonably create the appearance that they are biased against one party or favorable to another. These provisions of the Code are intended to be applied realistically so that the burden of detailed disclosure does not become so great that it is impractical for persons who might be best informed and qualified to decide particular types of cases.



Moreover, in a footnote the Code goes on to advise as follows: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Code relating to disclosure, it may be helpful to recall the words of the concurring opinion in a case decid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at arbitrators “should err on the side of disclosure” because, “it is better that the relationship be disclosed at the outset when the parties are free to reject the arbitrator or accept him with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it must be recognized that “an arbitrator’s business relationships may be diverse indeed, involving more or less remote commercial connections with great numbers of people.” Accordingly, an arbitrator “cannot be expected to provide the parties with his complete and unexpurgated business biography,” nor is an arbitrator called upon to disclose interests or relationships which are merely “trivial.” (concurring opinion in *Commonwealth Coatings Corp. v. Continental Casualty Co.*, 393 US 145, 151~152, 1968.)

In order to facilitate disclosures by arbitrators, the AAA has adopted the Notice of Appointment Form (a copy of which is attached) which must be executed by every neutral arbitrator in every case at the time of appointment. The arbitrator must indicate on this form whether or not there is a disclosure to be made.

We follow several general rules of disclosure in our administration:

1. Although the major burden of disclosure falls on the arbitrator, responsibility to ascertain potentially disqualifying facts also rests with the parties;
2. Every disclosure, no matter how insignificant is communicated to the

parties;

3. If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arbitrator or another source seems vague or incomplete, further inquiries are made to gather pertinent facts for transmittal to the parties;

4. Disclosures received at the last minute or at the first hearing should be reduced to writing for record keeping purposes. If the disclosure is sufficiently serious, it may necessitate the postponement of the hearing or the replacement of the arbitrator.

As a general rule at the AAA, we subject the disclosed information to the "four tests." Is the disclosed relationship direct, continuing, substantial and recent? Weighing the answers to these four questions serves to help us decide if a disclosure is disqualifying. We ask ourselves: Does a given relationship create, to a reasonable person, even the appearance that an award would not be fairly rendered? If the answer is yes, we would remove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even though the AAA is always interested in expediting the handling of any case, it is safer in the long run, especial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hearings, to arrange for the prompt substitution of an arbitrator in order to conduct hearings without a cloud of potential subsequent litigation.

### **Recent Cas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arties**

There have been 13 cases filed with and process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between 1990 and 1994, which involved Korean Enterprises. Seven (7) of the cases were filed and administered in our San

Francisco Regional Office; three (3) cases were filed and administered in our New York City Regional Office; and, one (1) case each was filed and administered in our Los Angeles, Minneapolis and Pittsburgh Regional Offices.

Of these 13 cases, 7 have been awarded, 5 were settled by the parties themselves, and 1 is still pending at this time.

### Settled Cases

56 T 145 287 92 — This case involved the dismissal of a manufacturer's representative and was filed by the representative against the manufacturer. The manufacturer was a Korean business. Minnesota Law requires that a manufacturer's representative must arbitrate claims against a manufacturer that hires and then dismisses him. This matter was amicably settled by the parties in May 1993. Because the AAA destroys files on settled cases after one year, we have no more particular information on this matter.

72 T 180 1500 93 — This case involved alleged failure to pay obligations pursuant to a separation agreement, between two physicians specializing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to dissolve their medical practice. This matter was filed with us in our Los Angeles office in November 1993. An arbitrator was appointed and a hearing date was scheduled, but the parties were able to reach a settlement before any hearings commenced.

55 117 0163 93 — This case involves claims, arising under a distributorship agreement, by an American party (the licensor) in the business of developing, marketing and licensing computer software programs and related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gainst a South Korean party (the distributor) which is in the business of develop-

ing and marketing computer software and hardware produc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lsewhere. This matter is pending and active. It is being heard by three arbitrators one is a retired state court judge, one is a lawyer and one is the Director of a Software Engineering for a high-tech Pittsburgh Company. Hearings are expected to begin in November 1995.

13 T 120 0327 92 — The Demand for Arbitration in this was destroyed, but we know the matter settled.

74 T 117 1909 91 — This case was settled in 1992 and the file was destroyed.

74 T 117 1643 94 — The case involved a dispute over the termination of a Manufacturing Agreement. This case settled before a list of arbitrators was sent. According to the lawyer representing the claimant, this matter was settled by the principals of each company soon after it was filed in arbitration.

### Awarded Cases

13 T 125 1363 91 — This case involved claims for breach of purpose /sale of iron/steel matter.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191,806.

13 G 147 0786 93 — This case involved 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1,748.

74 T 117 0483 90 — This case involved claims for damages in the amount of \$1,080,000, plus interest, attorneys fees and punitive damages as allowed under California law.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for a total of \$2,806,045.

74 G 199 0846 90 — This case involved claims for breach of warranty and intentional and negligent misrepresen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chemical products manufactured by respondents.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in the amount of \$358,617.00, plus punitive and exemplary damages in the amount of \$100,000.00. Claimant's counsel advises that respondent did not show up at the arbitration hearing, and that even though they won the arbitration they have not attempted to enforce the award in Korea yet. However, they have retained local(Korean counsel).

74 T 117 1280 91 — This case involved 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1,000,000, plus interest in the amount of \$144,000.

74 G 133 1355 92 — This case involved a dispute over the termination of a Licence Agreement.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Claimant properly terminated contract. Korean party apparently went out of business anyway.

74 T 181 0060 94 — This case involved a dispute for consultant fees in the procurement of a security service contract at a US military installation in South Korea. The award was for the claimant \$250,000.00. Respondent did not comply with the award and the claimant sought and got a judgment against the Korean party in the Korean courts. Local counsel was retained for this purpose and the court awarded claimant its attorney's fees. The AAA supplied claimant with a certified copy of its file documents for the court, which requested a record, but of course there was no record. In-house counsel for the claimant recommended that Korean parties think about arbitrating with just one, as opposed to three arbitrators, and, if they can they should choose the language, the choice of law provision,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 한·미기업간의 상사분쟁의 실제 및 사례

—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 서 언

본 발표에서는 한·미 기업간에 발생했던 몇몇 특수 분쟁의 중재사례 이외에도 미국중재협회가 믿고있는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상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이 조명되고 있다.

### 배경설명

미국중재협회는 1926년에 창설된 공공서비스, 비영리, 회원제 기구로서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와 기타 자율적인 분쟁해결 기법을 사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뉴욕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걸쳐 주요 도시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본 협회는 행정서비스, 교육/연수, 세미나 등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협회는, 아울러, 모든 형태의 소송외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1925년(연방중재법이라고 알려진) 美합중국 중재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더욱 그 이용이 확대돼 왔다.

1955년 미국 통일주법에 관한 전국 행정관회의에서 통일중재법이 채택되게 되었다. 미국업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있는 근대 중재법은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국내분쟁중에서도 특히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중재는 수백만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 보험증권, 임대차 계약, 특허 및 독점계약, 고용합의서, 건설계약, 그 외 여러종류의 상거래 및 개인적인 계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외국의 법원을 되도록 기피하려고 한

다. 중재와 조정은 미국중재협회에서 개발된 것처럼 장기간의 경험으로 시행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직접 분쟁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또는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케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의 기업들은 그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협회에 의뢰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외국 법원의 재판절차 때문인 것 같다.

### 한·미 중재협정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국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전세계 50개국의 중재기관과 상호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과는 1974년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협정과 더불어 미국중재협회는 전세계 중재기구와 더불어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분쟁의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나 기타 유익한 분쟁해결방법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간에 체결된 협정은 때때로 미국과 한국 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재장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한·미 양중재기관이 권장하고 있는 중재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뉴욕과 서울에 합동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합동중재위원회는 각각 3명의 위원을 두게 되고 이 중 두명은 양기관에서 각각 지명하고 제3자인 나머지 한명은 위원장으로서 두명의 위원들이 선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3자는 양쪽 어느 기관에도 가입되지 않은 인사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세계의 많은 중재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중재협회도

상사중재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기업들간의 상거래 행위에 자신감과 안정을 심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 공 정 성

중재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측면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분쟁 당사자들이 미국중재협회와 같은 중견 중재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에는 경험이 풍부한 실무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다는 확신감을 갖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이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판정부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천건의 중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중재협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심문을 위한 실용적이고도 현명한 절차를 개발해 왔다.

미국중재협회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가?

중재인들이 최초로 미국중재협회의 중재인단으로 위촉되기 시작했던 초창기때부터, 그리고 그후 그들이 협회에서 연수를 받고 중재심문에 배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기초 훈련과정이건, 고급 훈련과정이건 협회가 마련하는 모든 연수 과정에서는 외관과 사실면에 있어서 중립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중재협회가 중재인들에게 중재를 의뢰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선정된 중재인들에 관한 자세한 배경자료가 전달된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이들 중재인후보자들에 대해 나름대로 알아보거나 조사해 볼 것을 권유한다. 협회측에서는 이들 중재인 후보자들과 분쟁 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간에 과거 소송사건을 함께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나



해 아직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측은 한국인 변호사를 이미 고용했다고 밝혔다.

74 T 117 1280 91-이 사건은 계약위반 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1,000,000과 \$144,000에 상당하는 이자가 판정되었다.

74 G 133 1355 92-이 사건은 라이선스계약의 종료조항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내려진 판정은 중재신청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그후 한국측은 이 사업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74 T 181 0060 94-이 사건은 한국에 있는 미군시설의 경비용역계약서 작성의 상담료에 관한 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250,000.00이 판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측에서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측에서는 다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시켜 한국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를위해 신청인측에서는 한국변호사를 계속 유지시켜야 했고, 한국법원은 피신청인측에 신청인의 변호사 수입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원이 기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던 관계로 미국중재협회는 관련 서류를 공증받아 신청인측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측 변호사는 한국측이 세명의 중재인이 아니라 중재인 한명이 중재토록 하는 것을 고려중이며 가능하면 그들이 언어, 법조항 선택, 중재장소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었다.

### 미국중재협회 중재비용과 법정 소송비용과의 비교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있는 문헌이 그리 많지 않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에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추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공하겠다.

대리인의 명단을 제공하여 그러한 관계가 없었던 당사자측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활동에 중재인후보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측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중재인 한명이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중재사무국 지명에 의해 내정되면 그 중재인은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서약에는 만일 분쟁당사자중 어느 쪽, 또는 그들의 법률고문 및 증인들과 이해상충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한 중재인의 석명이 포함되게 된다.

중재인의 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분쟁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법률고문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 직업, 사회 또는 기타의 분야에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중재절차동안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거나, 혹은, 언제라도 미국중재협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개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중 그러한 관계에 대해 알고있는 것이 있으면 아래의 난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중재협회가 분쟁당사자들의 법률고문들에게 이에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서약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중재인에게는 중재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공개된 자료를 받은 후에도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지속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어떠한 반대입장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바로 이것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에 대해 갖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한 후에도 상당한 양의 추가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분쟁당사자중 한쪽에서는 이러한 중재인의 지속적인 임무수행을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가 가끔있다. 분쟁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의 추가자료 공개후

중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국제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 분쟁당사자중 한쪽에서는 중재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반대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사무국이 내리게 되어 있다. 이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중재인들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

분쟁당사자들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 중재인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재인은 지명을 수락하기 이전에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정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무국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재인으로 결정되면 모든 추가 자료를 분쟁당사자와 사무국에게 밝혀야 한다. 중재인이나 분쟁당사자중 한쪽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게되면 사무국은 이에 대해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인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중 한쪽은 언제든지 어느 중재인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이 통보된 후 15일 이내, 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알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낼 수 있다.
2.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제기를 하게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은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쟁당사자중 한쪽이 중재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데 대해 상대방 당사자도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은 사임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없어도 사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모든 경우에서 이의제기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제9조

분쟁당사자중 한쪽이나 그 이상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인이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이 이의제기전에 관한 최종 결정은 사무국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된다.

미국중재협회는 중재인에 의한 추가자료 제공과 이의제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과정을 개발한 바 있다.

분명히 말해, 중재의 결과로 인해 개인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재인으로서의 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단, 분쟁당사자들이 1차 심문이전에 서면으로 중재인에 대한 자격박탈을 유보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사무국은 중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때로는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 언젠가 중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사업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중재인들은 그들이 과거에 현재의 분쟁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증인과 가졌던 관계가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중재인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중재협회의 정책이다. 그래야, 분쟁당사자들은 그 중재인을 신뢰하게 된다. 이렇듯 중재인의 신상에 대한 추가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상사분쟁 중재인들에게는 윤리규정 조항도 아울러 마련되어 있다 :

윤리규정 II. 중재인은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거나 중재인에게 공정하지 못한 편견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와 과거의 관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서 문

이 규정은 중재인들에게 그들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해관계 또는 기타의 관계가 존재하거나 분쟁당사자중 한쪽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한쪽을 편드는 듯한 정당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윤리규정 조항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상세한 추가자료 공개로 인해 너무 큰 부담이 조성되어 최고의 덕망과 자격을 갖춘 인사가 특정 분쟁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페이지 하단에 각주를 달아 본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중재인의 추가신상관련 자료공개에 관한 윤리규정의 적용에 있어 미국대법원의 소송건에서 내린 일치된 의견을 상기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 “중재인들이 자신의 신상자료중 일부만을 공개한다는 것은 엄연한 잘못으로서” 이는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거부하거나 그의 자료공개로 인해 과거의 관계를 알게되었음에도 그를 중재인으로 계속 인정하겠느냐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재인의 과거에 발생한 모든 관계는 초기에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재인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업관계와 수많은 사람들과 아주 먼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인이 자신의 사업경력을 공개함에 있어 “지극히 평범한” 이해관계나 과거의 관계까지도 하나 삭제하지 않고 완전무결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Commonwealth Coatings社와 Continental Casualty社간의 소송에서의 일치된 의견, 393 US 145, 151-152, 1968.)

중재인들의 신상내역 공개를 수월하게 하기위해 미국중재협회는 중재인 선정통지양식(양식 한부를 첨부했음)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중립적인 중재인이 선임될 당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에서 중재인은 공개할 추가내역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본 협회의 사무국에서는 몇가지의 내역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르고 있다 :

1. 중재인들은 자신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되지만 분쟁당사자들 역시 중재인의 자격을 박탈시킬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중재인의 내역에 관한 모든 공개된 사항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쟁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3. 중재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중재인에 관한 내역사항이 모호하거나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의뢰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전해준다.
4. 마지막 순간이나 첫번째 심문시에 공개되는 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공개된 내역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문을 연기시키거나 중재인을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미국중재협회에서는 공개된 내역사항에 대해 “4단계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 :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인가 :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관계인가; 상당한 규모의 관계인가; 최근의 관계인가? 이러한 네가지의 질문에 의거하여 그 답을 저울질하게 되면 공개된 내역이 중재인의 자격을 과연 박탈할 만한 것인가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이 내역에서 공개된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 중재인의 판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본다. 여기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면 중재인은 교체된다.

미국중재협회가 모든 분쟁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재인의 교체문제는 심문이 시작되기 이전에 마무리되어 심문중에 이에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심문이 먹칠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발생했던 한·미 기업의 분쟁건

1990~1994년 사이 미국중재협회에는 13건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관련된 중재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다. 그중 7건이 본 협회의 샌프란시스코 지부에서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또 다른 3건이 뉴욕 지부에서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미네아폴리스, 피츠버그 지부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다. 13건중 7건은 본 협회가 판정을 내렸고; 5건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되었고; 1건은 아직도 계류중에 있다.

### 해결된 분쟁건

56 T 145 287 92- 이 사건은 한 제조업체가 대리인을 해고시키자 해고당한 대리인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 제조업체는 한국 업체였다. 미네소타주의 법은 제조업체의 대리인은 자신을 고용하고 해고시키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은 1993년 5월 우호적으로 해결되었다. 미국중재협회는 해결된 건에 대해서는 일년후 관련자료를 파기시키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

72 T 180 1500 93- 이 사건은 두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각자 의료행위를 따로 하기위해 분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의 이행과정에서 한쪽에서 지불해야할 채무를 갚지않았다고 주장한데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93년 11월 본협회의 로스앤젤레스 지부에 접수된 건이었다. 중재인이 선임되고 심문날짜까지 잡혔는데 쌍방은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55 117 0163 93- 이 사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관련제품의 개발, 마케팅, 특허에 관한 사업을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하고있는 한 미국 기업(특히 제공자)이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한 한국기업(유통업자)을 상대로 제기한 건

이었다. 이 건은 아직 계류중이고 중재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이 사건은 세명의 중재인이 맡고 있는데 한분은 퇴직한 주법원 판사이고 다른 한분은 변호사로 활약중이며 나머지 한분은 피츠버그에 있는 한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다. 이 사건에 대한 심문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13 T 120 0327 92-이 중재건은 중간에 파기되었는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74 T 117 1909 91-이 건은 1992년에 해결되어 관련자료는 모두 파기되었다.

74 T 117 1643 94-이 건은 제조합의서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이었는데 중재인 명단이 발송되기전에 해결되었다. 이 사건의 중재를 처음 신청한 측의 변호사에 의하면 중재를 신청한 바로 후에 양회사의 주요 간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 판정된 건

13 T 125 1363 91-이 사건은 철강제품의 판매에서 계약위반이 생긴 사건이었는데 중재신청인에게 \$191,806이 배상액으로 판정되었다.

13 G 147 0786 93-이 사건은 계약위반사건으로 중재신청인에게 \$1,748이 배상액으로 판정되었다.

74 T 117 0483 90-이 사건은 이자와 \$1,080,000에 달하는 변호사 수입료 손해배상과 캘리포니아州법에 의한 벌금에 관한 건이었는데 총 \$2,806,045의 배상액이 판정되었다.

74 G 199 0846 90-이 사건은 보증위반과 피신청인이 제조한 화학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허위 의사표시를 한데 대한 사건으로 중재신청인에게 \$358,617.00과 벌금 및 기타 손실에 대해 \$100,000.00의 배상액이 판정되었다. 신청인측의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중재심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중재판정에서 이겼음에도 내려진 판정에 대



해 아직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측은 한국인 변호사를 이미 고용했다고 밝혔다.

74 T 117 1280 91-이 사건은 계약위반 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1,000,000과 \$144,000에 상당하는 이자가 판정되었다.

74 G 133 1355 92-이 사건은 라이선스계약의 종료조항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내려진 판정은 중재신청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다. 그후 한국측은 이 사업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

74 T 181 0060 94-이 사건은 한국에 있는 미군시설의 경비용역계약서 작성의 상담료에 관한 건이었다. 중재신청인에게 \$250,000.00이 판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측에서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측에서는 다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시켜 한국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를위해 신청인측에서는 한국변호사를 계속 유지시켜야 했고, 한국법원은 피신청인측에 신청인의 변호사 수입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원이 기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던 관계로 미국중재협회는 관련 서류를 공증받아 신청인측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측 변호사는 한국측이 세명의 중재인이 아니라 중재인 한명이 중재토록 하는 것을 고려중이며 가능하면 그들이 언어, 법조항 선택, 중재장소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었다.